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 외환검사 종결절차 개선 등 -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금번 개정은 외환 검사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자료 보관 및 검사 종결 절차에 개정이 필요하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제3자 수령 등의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자율점검표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II. 주요 개정내용

1. 검사자료 사본 반환 규정 폐지

- 개정 전 : 세관관서에 보관하는 검사자료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개정 후 : 검사대상자가 제출에 동의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2.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 및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종결 절차 개선

- 개정 전 : 검사종결 절차 「검사종결 → 검사결과 통지 → 관세청장 보고(재조사 지시 가능) → 검사결과 처분(의견진술 기회 부여)」순으로 진행
- 개정 후 : 검사종결 절차에서 검사결과 통지를 생략하여 現 훈령 적용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문제점

- 관세청장 보고 전 통지하여 재조사에 따른 결과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 훼손
- 이중 소명기회 부여로 인한 불필요한 검사종결 절차 지연 발생
-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범칙조사 시작 이전에 범칙조사 전환 예정이라는 사실과 위반행위를 통지하여 증거인멸의 동기 제공

3. 증거인멸 우려 검사대상자 검사 연기신청 제외

- 개정 :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시작일에 검사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

4.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단순 용어 변경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8.4)내용을 자율점검표에 반영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반영, 어려운 용어 정비

III. 시행일자 및 의견제출방법

1. 시행일자 : 2023. 1. 1.

2.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 담당자 : 민병수 사무관(042-481-7931)
- 제출기한 : 2022. 12. 12.
- 제출방법 : E-MAIL(bsomin@korea.kr) / FAX(042-481-7949)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_일부개정_입안계획서_행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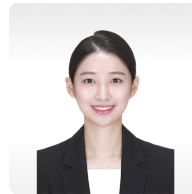
[붙임2]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_일부개정_신구대비표_행정예고

[붙임3]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_일부개정_개정안 전문_행정예고

I Contact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김혜원 팀장
T 070-4353-1596
E h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